

[협약 서식 제4호]

산업기술개발사업계약서 (나노반도체장비원천기술상용화사업)

- 주관기관과 참여기업간 계약용 -

- 기술개발 과제명 : 45nm 이하급 저유전율막 PECVD 장비 개발
- 총 사업기간 : 2007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24개월)
- 협약 기간 :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12개월)
- 기술개발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 계
		현금	현물	소계	
금 액	68,206	9,744	21,150	30,894	99,100

- 주관책임자

소속: (주) 아토

직위: 전무이사

성명: 김호식

- 협약 대상자

(갑)주관기관

(기관명)(주)아토

(대표자) 장호승

(을)참여기업

(기업명)(주)아이피에스

(대표자) 문상영

문상영

위 과제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표 및 내용)

본 계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첨부1)나노반도체장비원천기술상용화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의 목표 및 내용에 따른다.

제2조(기술개발사업의 신의성실수행)

① 본 계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갑), (을), 실시기업 및 위탁기관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나노반도체장비원천기술상용화사업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기술료징수및사용관리에관한요령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제1조의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준수,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 및 시행, 개인명의 출원 금지 등 지식재산권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갑)과 (을)은 본 계약에 의거 기술개발사업을 수행 또는 그 결과를 활용하는 전 과정에 걸쳐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 등)

① 제1조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관리기관은 (갑)이 협약체결시 제출한 「(첨부8)정부출연금 입금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다음과 같이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지급한다.

(단위 : 천원)

협약구분	사업비 지급일자	아이피에스
1차년도(1차)	2007년 12월 일	68,206

②(을)((갑)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을)의 권한과 책임도 함께 갖는다. 이하 같다)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제1항의 정부출연금 이외의 현금 및 현물(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을 주관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이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현금, 은행도약속어음,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공증된 약속어음, 은행지급보증서, 전자어음 또는 참여기업 대표가 배서한 제3자 발행 약속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현물은 주관기관이 희망하는 시기에 공급하여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위 : 천원)

기술개발사업비		아이피에스	
기술개발사업비	현 금	9,744	
	현 물	21,150	
	계	30,894	
지급시기 및 금액	금 액	9,744(현금)	21,150(현물)
	지급일자	2007년 12월	사업기간 내

③총괄관리기관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부출연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가. 운영요령 제24조 제3항의 경우
- 나. 정부의 예산 및 자금 사정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다. 본 계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라. 총괄관리기관 또는 평가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진도점검, 정밀점검, 단계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마. 기타 총괄관리기관 및 평가 전담기관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이하 “불가 항력의 사유”라 한다)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④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 의거 (갑), (을),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공동연구 기관)이 협약 또는 계약체결시 제출한 관리계좌 또는 기술개발사업비계좌로 기술 개발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총괄관리기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리계좌 또는 기술개발사업비계좌에 연결된 기술개발사업비카드를 개설하여 「(첨부2)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비집행기준」에 따라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총괄관리기관은 본 계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기술개발사업비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계좌 또는 기술개발사업비계좌의 금융거래 정보 조회를 통한 기술개발사업비의 집행내역을 정기적 또는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 (을), 위탁기관 등 기술개발사업비를 사용 관리하는 자는 이에 동의한다.

⑥(갑)은 사업계획서상 위탁기술개발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의 계약을 통해 위탁기술개발사업비를 지급하고, 위탁기관은 지급받은 위탁기술개발사업비를 제4항에 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⑦(갑)은 본 계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갑)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지급받은 기술개발사업비 중의 일부를 (을)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을)은 지급받은 기술개발사업비를 제4항에 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⑧본 계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이 최종 완료되었거나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본 계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어 발생한 기술개발사업비의 사용잔액의 처리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갑)과 (을)이 계약을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4조(기술개발결과 및 사업비사용실적 보고)

①(갑)은 당해 연도 협약기간 종료일의 40일 이전까지 연차보고서와 차기년도 사업계획서를 주관기관이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당해년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평가 전담기관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정산을 완료한 후 사업비정산결과보고서를 평가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최종년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최종보고서를 주관기관이 반도체연구조합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갑)은 평가 전담기관의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로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까지 기술개발결과활용현황보고서를 평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평가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 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기술개발 결과보고에 대하여 (갑)과 (을)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과 (을)은 평가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내용 등을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③(갑)과 (을)은 협약기간 종료 후 평가 전담기관의 사업비 정산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까지 동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기술개발사업비 사용잔액 중 정부출연금의 사용잔액을 평가 전담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갑) 또는 평가 전담기관의 기술개발 결과보고와 사업비의 정산에 적극 협조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갑)과 (을)은 총괄관리기관, 평가 전담기관 또는 이들이 지정하는 자의 기술개발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① (갑)과 (을)은 운영요령 또는 관리지침 등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 계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갑)은 (을)의 요청 또는 필요한 경우 (을) 또는 참여기업을 변경할 수 있다.

③(갑)이 제1조의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목표의 변경, (갑), 참여기업, 위탁기관(공동 연구기관) 및 총괄책임자의 변경, 기술개발사업기간 변경, 3,000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의 변경 및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갑)은 당해 연도 협약기간 종료일의 1개월 이전까지 협약변경의 사전승인을 총괄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 석·박사인력의 변경은 진도점검시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갑) 또는 (을)이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총괄관리기관에게 (갑) 또는 (을)의 변경을 위한 사전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갑) 또는 (을)이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수행 또는 결과의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변경 전 (갑) 또는 (을) 귀속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는 양도·양수 계약을 「산업기술개발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체결하고 동 계약서를 공증 후 공증된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을 총괄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약)

①(갑)과 (을)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일로부터 1개월의 기간을 두고 계약상대자에게 최고(催告)한 후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가. 본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체결된 산업자원부 또는 총괄관리기관과 (갑)의 협약이 해약된 경우
- 나. (갑) 및 총괄책임자, (을) 및 (을)의 대표, 위탁기관 및 위탁기술개발사업책임자 등 본 계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 또는 활용하는 자(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의 보고서 미제출, 연구 부정행위 등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기술개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사업수행자의 기술개발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기술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수행자가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사업수행자가 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 마. 사업수행자에게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술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바. 사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의한 민간부담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사. 사업수행자가 제3조에 의한 기술개발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 또는 관리하였을 경우
- 아. 사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에 의한 기술개발결과 보고를 3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자. 제4조에 의거 제출된 기술개발 결과보고에 대한 산업자원부, 총괄관리기관과 또는 이들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진도점검, 정밀점검 또는 단계평가 등의 결과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
- 차. 기술개발목표가 다른 기술개발에 의해 성취되어 기술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카. 산업자원부가 산업기술정책 수행상 기술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타. 기타 가호 내지 카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사업수행자는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기술개발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제3조에 의거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의 집행내역과 사용잔액을 평가 전담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 전담기관의 정산결과에 따른 환수결정액을 평가 전담기관의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 전담기관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실시계약의 체결)

①(갑)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기업 등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갑) 및 (을)이, (갑)이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을)이 기술개발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 실시기업이 된다.

②(갑)은 평가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조기완료 및 성공 판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실시기업과 정액기술료징수협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본 계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실시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을), 평가 전담기관 등과의 상호 협의 없이 제1항의 실시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갑)은 제2항에 불구하고 평가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조기완료 및 성공 판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각종 사항에 대해서 (갑)은 평가 전담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갑)이 평가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1항 실시

기업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④(갑)은 제3항에 의거하여 평가 전담기관에 실시기업의 변경을 위한 사전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본 계약에 의한 사업의 수행 또는 결과의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변경 전 실시기업 귀속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는 양도·양수 계약을 「산업기술개발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체결하고 동 계약서를 공증 후 공증된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을 평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갑)이 수행하는 세부과제 중 정액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는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⑥(갑)은 제5항에 의한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과제에 대하여 공개활용, 기술이전 등 기술개발사업의 폭넓은 성과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정한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⑦평가 전담기관은 최종평가 종료 후 제5항에 의한 정액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과제, 제9조제3항에 의거 정액기술료의 납부를 면제한 과제 및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평가 전담기관, (갑) 또는 (을) 소유 중인 지식재산권 또는 유형적 발생품 등에 대하여 공개 활용, 기술이전 등 기술개발 사업성과의 폭넓은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기술료의 납부)

①제8조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갑) 및 (을)이 각각의 참여율(민간 부담금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기술료 납부의무를 가진다.

②(갑)은 평가 전담기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8조에 의거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한 실시기업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정액기술료를 징수하여 평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전담기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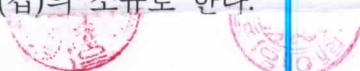
과제명	주관기관	참여기업	정액 기술료율
45nm 이하급 저 유전율막 PECVD 장비 개발	(주)아토	(주)아이피에스	20 %

※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과제는 0%로 기록

③(갑)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평가 전담기관에 정액기술료납부계획서와 은행도약 속어음 등으로 정액기술료를 납부한 실시기업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정액기술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시기업이 은행도약속어음만기일 등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일의 3개월 이전까지 평가 전담 기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용화실패(지연)사유서를 제출하여 정액기술료의 납부시점 · 납부금액 조정 또는 정액기술료의 납부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전담기관은 사업화 진척도 등을 평가하여 정액기술료를 계속 징수, 납부시점 · 납부금액의 조정 또는 정액기술료의 납부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지식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등)

본 계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과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또는 시제품 등(이하 “유형적 발생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지분(이하 “정부소유지분”이라 한다)은 계약기간의 기술개발결과에 대한 평가 전담기관의 최종평가가 완료될 때까지는 (갑)의 소유로 한다. 다만, (갑)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 또는 총괄관리기관의 소유로 하되, (갑)이 기술개발사업의 성과활용에 필요한 실시계약 체결 후 실시기업이 정액기술료의 납부를 완료한 시점부터 (갑)의 소유로 한다.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본 계약에 의거 기술개발사업을 수행 또는 그 결과를 활용하는 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운영요령, 관리지침, 기술료징수및사용관리에관한요령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과 본 계약을 준수하고 본 계약에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갑) 및 (을) 등 사업수행자가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총괄관리기관 또는 평가전담기관은 (갑) 및 (을) 등 사업수행자에 대하여 운영요령에 의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보장의 의무 등)

①(갑)과 (을)은 본 계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 또는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상호 합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갑)과 (을)은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홍보 또는 쟁송 등 해당기관의 수혜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합의 없이 본 계약에 의거 제공된 기술개발결과의 보고서 및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계약상대자의 명칭, 상표 또는 의장 등을 사용하거나

나 이를 암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한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제재 및 정부출연금 환수 조치)

① 총괄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갑), (을), 실시기업 또는 위탁기관 등 본 계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제3조에 의거 지급한 정부출연금의 전액, 일부, 사용 잔액, 이에 상당하는 유형적 발생품(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시제품 등) 또는 지식재산권(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환수하고, 향후 정부가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명칭의 공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사업수행자별 귀책사유가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총괄관리기관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재 및 환수에 필요한 포괄적 선 조치를 취하고 귀책사유가 결정된 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제7조에 의거 계약이 해약된 경우

나. 사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에 의한 기술개발 결과보고 및 사업비사용실적 보고를 3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다. 사업수행자가 제4조에 의거 제출된 기술개발 결과보고 및 사업비사용실적 보고에 대한 총괄관리기관, 평가 전담기관 또는 이들이 지정하는 자의 평가 또는 정산 결과에 따라 중단 또는 실패로 결정된 경우

라. 사업수행자가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사용 잔액 및 환수결정액을 평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로 (갑) 또는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에 의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바.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시기업이, 실시계약 체결이전의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의한 정액기술료의 납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사업수행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및 제12조에 의한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아. 기타 가호 내지 사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총괄관리기관은 본 계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이 상기 제1항 및 관계법령에 의거 불성실수행 사업 또는 과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3조의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로부터 해당 정부출연금 지급금액의 전액을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유형적 발생품, 지식재산권(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수 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 ①사업수행자가 본 계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를 공개, 발표 또는 활용할 경우 반드시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나노반도체장비원천기술상용화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 ②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관계법령의 내용은 계약서의 내용으로 본다.
- ③(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15조(해석)

- ①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 ②본 계약서(첨부 포함)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1. 나노반도체장비원천기술상용화사업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기술개발사업 사업비집행기준 1부
3. 주관기관과 위탁기관의 계약서(사본, 첨부서류 제외) 1부
4. 주관기관, 참여기업의 현금 및 현물 출자확인서 각 1부
5. 계약체결에 필요한 위임장 각 1부
6. 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 1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서 해당자)
7. 정부출연금 입금계좌 각 1부
8.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사업비계좌 각 1부
9. 민간부담금 납입증명서류 각 1부
10. 협약 체결의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사본) 1부
11. 연구비 카드제 관련 서류(별첨 참조)

2007년 12월 17일

(갑)주관기관

(기관명)(주)아토

주관책임자 소속: (주)아토

(기업명) (주)아이피에스

(을)참여기업

직위: 전무이사

(대표자) 장호승

성명: 김호식

(대표자) 문상영



산업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1. 관련 근거

-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18조(기술개발사업비 계상)
-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25조(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28조(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2. 목적

- 산업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자)에게 기술개발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부적절한 집행을 예방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함

3. 적용기준

- 상기 [1. 관련근거]를 적용하되 관련근거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근거 간의 내용이 상충시 본 기준 적용

4. 산업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사용 및 인정 기준

가. 사용 원칙

- 1) 사업비의 집행은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입고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총괄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 계속 과제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 행위(공급자와의 계약)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인정한다.
- 2) 5만원 초과의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3) 참여기업이 생산 판매 중인 견품, 연구기자재 등은 현물로만 사용한다.
- 4) 동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 영수증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단, 동 사업비로 구매한 물품이 발주 및 입고 서류로 명확히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현물의 사용은 해당기관장이 확인하는 현물출자 확인서(보고서식 제4호 ④ 참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 6) 영리기관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7) 내부장비 임차료, 연구활동비, 간접경비, 기술개발준비금,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는 협약시 인정된 금액이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8)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는 동 3개 세부비목 이외의 다른 세부비목으로 변경사용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
- 9) 예금이자는 비목별 변경사용 기준에 적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 10) 인건비를 20%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평가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비목별 세부 원칙

- 1) 인건비
 - 가) 내부인건비 집행내역은 그 증빙을 위하여 참여연구원별로 월별근로 소득 원천 징수부, 과제별 참여율 현황표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나) 내부인건비는 기관공통비목으로 기술개발 수행기관에서 흡수하여 기술개발 수행기관의 장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한다.
 - 다) 외부인건비는 당사자의 인건비 수령통장으로 입금하고, 평가 전담기관 요구시 무통장 입금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참여연구원 변경 및 참여율 조정 지급시 평가 전담기관에 사업비사용실적 보고시 보고하여야 한다.
 - 마) 중소기업 신규 채용 석·박사 인력의 퇴사 및 미채용의 경우 인건비 잔액은 평가시 평가 전담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2) 직접비
 - 가) 당초 협약서상의 변경전후 구입가격이 3,000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변경은 총괄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동일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규격, 제작회사, 금액 등의 변경이나 유사기종의 변경구입은 승인이 불필요하다.
 - 나)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구입한 장비의 임차료는 불인정 한다. 단, 기완료된 과제 중 정액기술료를 은행도 약속어음 등으로 평가 전담기

관에 납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다) 동 기술개발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품목에 한하여 사용한다.
- 라) 기업과 이사간 거래, 특수관계인간 거래 등에서의 부적정 금액(정상 거래 가격을 벗어난 경우)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마) 여비는 해당기관이 정한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며, 해당기관의 품의절차를 거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바) 출장품의서에는 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금액산출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사) 여비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한 부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 아)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등은 해당기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 자) 학회활동의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학회 참가비, 연회비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종신학회비와 개인성 경비는 불인정 한다.
- 차) 회의비는 장소임대료, 음료·다과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일 건별 사용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등)와 참석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 카) 기술개발사업비 정산수수료는 평가 전담기관이 정한 회계법인의 위탁 정산 수수료로 사용한다.

3) 간접비

- 가) 간접경비는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한하여 기관의 일괄흡수 사용을 인정한다.
- 나) 기술개발준비금, 과학문화활동비 및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사용 용도 외에 사용한 금액은 불인정한다.

4) 위탁(공동연구)연구개발비

위탁(공동연구)연구개발비는 각 비목별로 상기 1) 내지 3)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한다.